

■ 자동차보험 상품 요약서

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반드시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.

가.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

□ 자동차보험의 종류 및 가입대상

보험종류	가입대상
개인용, 다이렉트개인용, 다이렉트개인용(인터넷)	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(법정승차정원 10인 이하) 단, 인가된 학원 또는 자동차학원대표자소유의 자동차 로서 운전교습도로주행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차는 제외(업무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임)
업무용	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
다이렉트업무용 다이렉트업무용(인터넷)	개인소유 자가용 3종 승합, 경승합차 개인소유 자가용 4종 화물, 경화물차
영업용	모든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
이륜차	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

□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

- ① 대상 :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또는 기존 가입기간 동안 사고를 여러 번 야기하여 보험 회사가 인수를 거절한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.
- ② 취지 : 인수거절된 가입자에게 종합보험 가입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무보험자동차 양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및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.

나. 보험금 지급사유,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 사항

□ 의무보험 관련사항

① 정의

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(이하 자배법)에 의거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을 의미합니다.

② 보상한도

대인 I	사망	최고 1억 5,000만원
	부상	최고 3,000만원
	후유장애	최고 1억 5,000만원
대 물		2,000만원 이상

③ 특 징

- 강제보험성 : 자배법에 근거한 강제보험, 자동차보유자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반면 보험회사에게도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인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
- 계약의 해지 제한(의무보험의 경우는 계약자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. 단,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는 해지가 가능합니다)
 - 자동차의 말소등록(이륜차는 사용폐지)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
 -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
 - 천재지변, 화재, 도난,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- 중복계약의 경우
 - 폐차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등
- 유한보상제
 - 대인배상 : 보험가입금액은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액이며, 1사고당 한도는 없습니다.
 - 대물배상 : 보험가입금액은 1사고당 한도입니다.

○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인정

피보험자에게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○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

자배법에 의거하여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보유불명사고,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시 대인배상 I 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음주운전, 무면허운전, 마약·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, 다음의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
1. 대인배상 I : 한도내 지급보험금
2. 대인배상 II : 1사고당 1억원
3. 대물배상
○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「대물배상」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: 한도내 지급보험금
○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「대물배상」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: 1사고당 5,000만원

④ 의무보험 가입대상 자동차

-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
-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자배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*

* 덤프트럭,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, 타이어식 기중기,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, 콘크리트 믹서트럭, 타이어식 굴삭기,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, 도로보수트럭, 노면측정장비(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)

⑤ 의무보험 미가입시 제재

- 미가입시 과태료

의무보험 미가입기간	자가용자동차		사업용자동차		이륜자동차	
	대인 I	대물	대인 I	대물	대인 I	대물
10일이내	10,000원	5,000원	30,000원	5,000원	6,000원	3,000원
매1일 초과	4,000원	2,000원	8,000원	2,000원	1,200원	600원
최고한도	60만원	30만원	100만원	30만원	20만원	10만원

* 자배법 시행령 [별표 5]

○ 미가입운행시 벌칙
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
□ 담보내용

① 대인배상 I

자동차를 소유, 사용, 관리하는 동안에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자배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.

② 대인배상 II

○ 보상범위

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 I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.

구 분	내 용
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	사망, 부상, 후유장애
비 용	손해방지 및 경감비용, 권리보전과 행사비용, 긴급조치비용,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
기 타	확정판결에 의한 지연배상금

- 보상한도 : 피해자 1인당 5천만원/1억원/2억원/3억원/무한 등

- 특징 : 대인 I의 초과손해 보상

③ 대물배상

○ 보상범위

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, 파손,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생긴 피해자의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.

구 분	내 용
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	- 직접손해: 수리비용, 교환가액 - 간접손해: 대차료, 휴차료, 영업손실
비용	손해방지 및 경감비용, 권리보전과 행사비용, 긴급조치비용,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
기타	확정판결에 의한 지연배상금

○ 보상한도

1사고당 2천만원 (2016.4.1일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)

※ 보상한도 3/5/7천만원, 1/2/3/5/7/10/20억원은 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
가입 시 보상합니다.

④ 자기신체사고

○ 보상범위

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·사용·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
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사망, 부상,
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
○ 보상한도

구 분		사망/부상/후유장애
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 금액	자기신체사고	1천5백만원/1천5백만원/1천5백만원
		3천만원/1천5백만원(3천만원)/3천만원
		5천만원/1천5백만원(3천만원, 5천만원)/5천만원
		1억원/1천5백만원(3천만원, 5천만원)/1억원
	자동차상해 특별약관	1억원/1천만원(2천만원, 3천만원, 5천만원)/1억원
		2억원/2천만원(3천만원, 5천만원)/2억원
		3억원/3천만원(5천만원)/3억원
		5억원/3천만원(5천만원)/5억원
		10억원/5천만원/10억원

⑤ 자기차량손해

○ 보상범위

피보험자동차와 타차간의 충돌 및 접촉 또는 피보험자동차 전부의
도난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중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
에서 보상합니다. (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

않음)

※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가입 시 타물체와의 충돌, 접촉, 추락, 전복, 화재, 폭발, 낙뢰, 차량의 침수에 의한 손해까지 보상합니다.

○ 보상한도 :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

○ 자기부담금 :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소 자기부담금과 최대 자기부담금을 한도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의 20% 또는 30%에 해당하는 금액

⑥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

○ 보상범위

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(뺑소니차 포함)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피보험자 1인당 최고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.

○ 가입조건 : 대인배상 I, 대물배상,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

○ 특 징 :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가입시 「다른자동차운전 담보 특별약관」이 자동 적용

□ 주요 면책사항(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)

담보종목		주요 면책사항
대인배상 I		-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
임 의 담 보	공통적용	-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-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,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(영업용 자동차보험은 제외) -지진,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-피보험자자동차를 시험용,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(단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)
	대인II	-피보험자 또는 그의 부모, 배우자, 자녀에게 생긴 손해 -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-피보험자가 피보험자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
	대물배상 (대물배상 확대 특별약관)	-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-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-피보험자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-남의 서화, 골동품, 조각물,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의 소지품에 생긴 손해(단,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손 보상)
	자기신체사고 (자동차상해 특별약관)	-피보험자가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.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. -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
	무보험차에 의한 상해	-피보험자가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.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. -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-피보험자의 부모, 배우자, 자녀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
	자기차량손해 (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)	-피보험자자동차의 일부 부분품, 부속품, 부속기계장치 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-피보험자자동차에 생긴 흠, 마멸, 부식, 녹 등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-음주·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

□ 주요 특별약관

①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약관

특정범위 이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
-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: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
-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: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특별약관
-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: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
-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: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및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형제 자매로 한정하는 특별약관
- 기명피보험자 및 지명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: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외 지명 1인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
-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: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 혹은 임차인 소속의 임직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 소속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
- 가족 및 지정1인 운전자한정 특별약관 :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및 그 외 지명 1인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(공동물건에 한함)
- 부부 및 지정1인 운전자한정 특별약관 :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외 지명 1인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 (공동물건에 한함)

② 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특별약관

특정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
-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
(만 21세, 만 24세, 만 26세, 만 28세, 만 30세, 만 35세, 만 43세, 만 48세 이상)
- 운전자연령 만49세이하 한정운전 특별약관
- 운전자연령 만59세이하 한정운전 특별약관

③ 보험료 납입관련 특별약관

-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: 보험계약자가 납입할 1년간의 보험료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약관입니다.

④ 기타

-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: 양수인이 양도일 이후 15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야기한 경우 배상책임(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)의 보상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는 특별약관입니다.
-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: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 중 대인, 대물, 자기신체사고를 일으켰을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자동차의 보험계약으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을 보상합니다.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으로서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(다인승포함), 경/3종승합, 경/4종화물자동차이면서 “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”담보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적용 됩니다.
-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: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 중 다른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으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을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공제하여 1천만원을 한도로(보험가액이 1천만원보다 낮을 경우 보험가액을 한도로) 보상합니다.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와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한 경우에 가입 가능하며,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: 보통약관에서는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나, 승합차 및 승용차의 경우 이 특약에 가입하면 유상운송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.

다. 보험료 분석표

저희 AXA손해보험(주) 인터넷 홈페이지 <http://www.axa.co.kr>의 「보험가격공시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라. 보험료 산출 기초

□ 보험료의 구성

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에 예정부가율(예정부가보험료)을 반영하여 산출하며, 예정부가율(예정부가보험료)은 예정이익률과 예정사업비율(예정사업비)로 구성됩니다.

구분		손해율	사업비율	이익률
개인용	대인I	77.9%	22.1%	0.0%
	대물	75.9%	22.1%	2.0%
	기타	89.3%	8.7%	2.0%
업무용	대인I	79.0%	21.0%	0.0%
	대물	77.0%	21.0%	2.0%
	기타	90.6%	7.4%	2.0%
영업용	대인I	80.2%	19.8%	0.0%
	대물	78.2%	19.8%	2.0%
	기타	92.0%	6.0%	2.0%
이륜차	대인I	82.7%	17.3%	0.0%
	대물	80.6%	17.4%	2.0%
	기타	94.9%	3.1%	2.0%

*TM 채널 기준